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 치매진단을 받은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 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 실비(1인당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 20만원(월 최대 40만원)
- ※ 본 사업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신청방법

- 치매어르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연락처 : 1899-9988)



“

만일 치매에 걸렸는데...
주변에 가족이 아무도 없다면
나의 경제적, 법적 권리는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

2018년 9월부터 시작된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홀로 계시는 치매어르신께
후견인 선임을 지원합니다!

치매공공후견 상담문의는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로!

”

치매공공후견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후견심판청구 절차, 후견인 연계, 후견활동 관리 등을 지원하고 관련 비용도 지원합니다.

- 관련 근거 :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민법 등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 성년후견제도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 관련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



치매공공후견사업 상담 사례

문의 내용

오래전 배우자와 사별하고 자녀도 없는 82세에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으나, 임대 주택에서 혼자 생활하시다가 낙상사고를 당해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 낮아서 어르신 스스로 병원비를 낼 수도 없고, 임대주택 계약만료일은 다가오는데 계약문제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족이 없는 치매 어르신이 도움 받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 내용

치매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해진 치매 어르신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9월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연령, 치매정도, 경제수준, 가족의 유무와 관계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을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가정법원에 공공후견인을 선임하도록 요청하여 치매 어르신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공공후견인은 치매 어르신에게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기초생활 수급비 등 재산관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체계 구축 등의 후견 사무를 수행하여 치매 어르신을 보호하게 됩니다.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이용 절차

1 신청

주민센터, 요양시설 등에서 치매노인을 발굴하여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합니다.



2 후견대상자 선정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노인의 독거여부, 소득수준, 후견이 필요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견대상자와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3 후견심판청구 준비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후견대상자와 후견인 후보자로부터 받고, 중앙치매센터 소속변호사는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4 후견심판청구

중앙치매센터 소속변호사는 지자체 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치매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청구서를 접수합니다.



5 후견심판 결정

(가정)법원은 후견심판청구를 심리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6 후견활동 시작

공공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활동하며, 치매안심센터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공공후견인 Q&A



1. 공공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업무범위가 다르나, 보통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통장 등 재산관리
- 관공서 등 서류 발급
-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2. 누가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 (공공후견인 자격) 미성년자, 파산선고 받은 자, 형(刑) 집행 중인 자 등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참조)가 없고, 후견인 후보자 교육을 받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공후견인 지원)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합니다.

